#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1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예지·김소희·백종헌

박덕흠 · 김도읍 · 최수진

엄태영 · 조정훈 · 서미화

김미애 · 김장겸 · 박정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스포츠 방송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 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7조의2(스포츠 방송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스포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
	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
	포츠 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따
	로 법률로 정한다.